

청주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가단65832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전희태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7,819,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2. 8.경 피고의 모(母)인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C를 통하여 그 딸인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고 및 인감증명서도 첨부 받는 방법으로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그런데 C가 위 대여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만나거나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갑 제1호증(차용 및 손해배상 약정서)의 피고 서명은 위조된 것이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갑 제1호증의 피고 서명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증거항변 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 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56068 판결 등 참조). 또한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무인의 대조에 의하여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필적 또는 인영·무인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 작성자의 필적 또는 인영·무인과 증명의 대상인 문서의 필적 또는 인영·무인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707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에 찍힌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차용 및 손해배상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의 인영과 위 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감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C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C가 그 딸인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겠다고 하여, C에게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을 피고가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그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C가 피고 본인 발행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차용증을 받아 왔다고 주장할 뿐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을 보았다거나 이를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 법원의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기재된 피고의 성명은 피고의 필적과 상이한 것으로 판정되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작성 및 교부를 전후하여 원고가 피고를 직접 만나거나 피고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그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한 바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의 인영의 동일성에 다툼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위 갑 제1호증에 대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문서제출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인감도장 날인자로 보이는 C가 피고로부터 위 날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329조 소정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갑 제1호증은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피고의 위 증거항변은 이유 있다.

설령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당시 피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갑 제1호증의 작성 및 교부를 전후하여 원고가 피고를 직접 만나거나 피고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그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한 바가 없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밖에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당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연대보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따라서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